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7,526,947	13,725,808
일반회계	407,007,507	12,210,225
특별회계	50,519,440	1,515,583
공기업특별회계	16,472,727	494,18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472,727	494,182
기타특별회계	34,046,713	1,021,401
수질개선 특별회계	13,780,780	413,4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08,581	30,257
주택사업 특별회계	4,807,123	144,21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40,348	28,210
자활기금 특별회계	1,971,015	59,130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0,083,484	302,50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95,030	35,85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26,086	6,783
기반시설 특별회계	34,266	1,02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25,71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2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공무원 기준인건비
- (2)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
-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 (4) 재해대책 및 복구비